

**코로나19 관련,
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(4차)**

2020. 3. 24.



**보건복지부
요양보험제도과**



I

목적 및 기본원칙

□ 관련근거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정례브리핑(' 20.03.18)
- 요양보험운영과 - 1217호(' 20.3.18.) “노인장기요양(주야간보호)기관 휴원 연장 권고 안내”

□ 목적

-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내 집단감염 방지와 피해 최소화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야간보호기관 휴원 연장 권고 등을 고려하여 「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(1차, 2차, 3차)」에 이어 4차 지침을 추가 안내

□ 기본원칙

- 동 지침은 원칙적으로 2020년 **4월(급여제공월 기준)**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임.
※ 다만, 적용기간이 다르거나, 4월 이후 연장 적용하는 특례기준은 별도 명시함.

연번	특례별 구분	변경(추가) 주요내용	적용월
1	종사자 ‘월 기준근무시간’ 인정 특례 중 예 방 적 격 리 (종 사 자 의 적 극 적 업 무 배 제 포 함) 인정 특례	* (3월) 1일 8시간, 최대 15일 범위내 * (4월) 1일 8시간, 최대 10일 범위내	4월 연장
2	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	동일	4월 연장
3	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	*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일체 불인정 (4월은 0.2점도 불가)	4월 연장
4	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(‘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’ 포함)	동일	4월 연장
5	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에 따른 ‘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’ 산정 기준	* 3.23.~4.3. 휴원권고 이행(긴급돌봄 전제) 시 ‘코로나 특례비용’ 추가 산정 - (비용)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60% (공단이 전액 부담) ... 요건 미충족 시 50%(본인부담금 제외)만 지급 * (3월분) 3.23 ~ 3.31 ‘코로나 특례비용’ 7일을 추가 인정 하여 3월 총 17일 산정 가능 * (4월분) 4.1.~ 4.5 ‘코로나 특례비용’ 3일 인정	
6	5등급 수급자 일반 방문요양 한시적 허용	동일	4월 연장
7	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기준 특례	동일	4월 연장
8	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	동일	4월 연장
9	특별재난지역 등(대구·경북) 종사자 퇴직에 따른 특별 지침	동일	~6월 연장
10	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	동일	4월 연장
11	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	동일(4.30.까지 유효기간 연장)	-

Ⅱ

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

1. 시설급여 등 종사자 ‘월 기준근무시간’ 인정 특례

□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, 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‘유급병가’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 인정

○ (확진자 발생 시)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

○ (의심되어 격리 시)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

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‘병가일수’와 별도산정 가능(예외코드)

※ 입원치료 통지서,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, 항공권 등 치료·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

- (적용월) 2020. 4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□ 종사자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한 경우 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유무를 떠나 업무배제를 하고 ‘유급병가’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

○ 1일 8시간,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
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‘병가일수’와 별도산정 가능(예외코드)

※ 중국(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

- (적용월) 2020. 4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□ 시설급여기관,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예방적(코호트)격리* 또는 시설장의 판단(주야간보호 휴원 등) 하에 일부 종사자를 적극적 업무배제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경우, 유급을 전제로 근무시간 일부 인정

*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 조치를 의미하며, 이 경우 ‘예방적 격리’ 관련 지자체에 제출한 신청서 또는 자체 수립한 관련 계획(종사자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정, 종사자 업무배제 상황, 사유 등 포함)을 수립하여 근거자료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함.

○ 1일 8시간, **최대 10일**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
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**‘병가일수’ 와 별도산정 가능(‘예방적 격리’ 코드)**

- 2차 지침에 의해 2020년 2월에 적용한 **‘적극적 업무배제에 따른 감산 유예 특례’**는 2020년 3월부터 종료됨.

※ 예방적 격리 사유(적극적 업무배제 사유 포함)로 “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”를 인정받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.

- (적용월) **2020. 4. (1개월간)** 급여제공월 기준

2.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

□ **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내에서 함께 격리된 경우**

○ 1일 8시간, **최대 15일 범위**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
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**‘병가일수’ 와 별도산정 가능(‘코호트 격리’ 코드)**

* 이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함.

- (적용월) **2020. 4. (1개월간)** 급여제공월 기준

○ 코호트 격리를 한 해당 월에 한하여 급여비용 감액산정이 되더라도 **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.**

※ 이 경우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하지 않음. (다만, 야간직원 배치 가산, 간호사 배치가산은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)

- (적용월) **2020. 4. (1개월간)** 급여제공월 기준

3.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

- 코로나-19 집단감염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외부인의 출입 최소화를 위해 외부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일시 중단하여야 함.
 - 맞춤형 프로그램 일시중단 조치에 따라 **2020.4.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불인정 (8회 이상 제공하더라도 4월은 0.2점 인정 불가)**
 - (적용월) **2020. 4. (1개월간)** 급여제공월 기준

4.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

-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(월 1회)을 유선상담(월 2회) 인정

< ‘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’ 예외 기준 원칙 >

- ◆ 감염우려 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한 경우, 유선상담(월 2회) 수행 시 인정
 - * 수급권 보호 및 가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제공 중(급여제공시간) 월 2회 유선상담(수급자, 종사자)하고,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
... 기존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‘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’에 기재(월 2회)
- ◆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기록(세부사항 별지 제24호 ‘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’)을 반드시 보관

-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(완전 중단)된 경우, 방문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

- 사회복지사(프로그램관리자)가 격리되거나 중국 등 6개국을 방문(사회복지사 동거가족 포함)하여, 14일간 업무배제되어 시설장이 급여제공 시간 중 유선상담(월 2회)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

※ 중국(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

-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가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방문요양 급여는 제공 중인 상황(일시중단 포함) 또는 수급자(동거가족 포함)가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하여 14일 간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(월 2회)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
- 코로나-19 확산으로 인해 감염우려 등으로 사회복지사(프로그램관리자)의 방문상담이 불가하다고 시설장이 판단한 경우, 유선상담(월 2회)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. ... 수급자(보호자) 방문상담 거부 포함
- (적용월) **2020. 4. (1개월간)** 급여제공월 기준

- ◆ 월 중 급여가 일시중단 된 경우에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유선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.
- ◆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,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,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.
- ◆ 프로그램관리자(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)가 유선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(월 2회)로 인정

□ 방문요양 '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' 지급

- 코로나-19로 인해 방문요양 급여를 일시 중단하는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기 고용된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목적으로 한시적으로(2020.3~4.) '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' 지급
 - (대상) 2020.2. (급여제공월) 기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
 - (지원범위) 의무배치 사회복지사* 1인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
 - *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별표 9에 따라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경우에 의무배치 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
 - ※ 사회복지사 등을 2인 이상 배치한 경우 의무 배치 사회복지사 1인만 지원금을 지급하며, 해당 월 수급자 수가 15인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의무 배치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한 가산(가산점수 1.8점)을 인정함

- (지원액) 고시 제58조에 따라 산출한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이 24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

※ 예시)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가산금액이 180만원으로 산출된 경우 60만원 추가 지급함.

- (준수사항) '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'을 청구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요건인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(수급자별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, 유선 상담 등)를 수행하여야 함.

○ (적용월) 2020. 4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5.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

- 면역력이 저하된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 권고 연장에 따라 휴원 이행 시 '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' 인정 확대 운영

- 휴원 권고에 따라 2020.3.23.~4.5.(2주간, 평일기준) 기간 동안 ①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② 최소한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, '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(10일)' 추가 청구 가능

- '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' 은 휴원 권고에 따라 추가적으로 산정하는 특례이므로, 별도 지침이 없는 한 20. 4. 5까지 적용

급여제공월	3차 지침	4차 지침(추가)
3월	'코로나 특례비용' 10일 +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= 최대 15일	3.23.~31. 기간 동안 휴원 이행 시 '코로나 특례비용' 7일 추가하여 총 17일 인정(평일) (+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추가 적용 시 총 21일) → 월 중 1일 사용조건으로 22일이 아닌 최대 21일 가능)
4월	-	4.1 ~ 4.5. 기간 동안 휴원 이행 시 '코로나 특례비용' 3일 인정(평일) (+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추가 적용 가능)

<주야간보호기관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>

1. 장기요양기관은 휴원 권고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...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문자, 유선 등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·보관하여야 함.
 ※ 긴급돌봄 수요조사 : 장기요양기관이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 중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, 보호자 맞벌이 등 가족돌봄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
2. 장기요양기관은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수준*의 인력을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
 * 수급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비율 준수
3.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인력(시설장 1명, 요양보호사 1명, 그 외 직종 1명 등 총 3명)을 배치하여야 함(정원 10인 이하는 시설장 1명, 요양보호사 1명)

☐ 휴원 권고 이행기관의 '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' 산정기준

◆ (기본원칙) 2020년 3.23.~4.5.에 한하여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 이행 시 '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(이하 '코로나 특례비용')을 최대 10일 인정하여 추가 산정 ... 산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.

※ 기존 고시(제32조제3항상) '미이용일 급여비용'(최대 월 5일)은 (20.3.2.~20.3.6.)에 산정 가능함.

◆ (주요원칙)

- ① (대상) 2020.2.29.까지 3월 급여계약이 적기 통보된 수급자(3월분)
 2020.3.31.까지 4월 급여계약이 적기 통보된 수급자(4월분)
- ② (인정일수)

급여제공월	4차 지침 상 '코로나 특례비용' 인정 일수
(전제조건) 2020년 3.23.~4.5.에 한하여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 이행 시	
3월	기존 3차 지침 상 '코로나 특례비용' 10일(3.9.~ 3.20.)에 추가하여 3.23. ~ 3.31. 기간 동안 휴원 이행 시 '코로나 특례비용' 최대 7일 인정(총 17일) (+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적용 시 총 21일) → 월 중 최소 1일 이용 요건으로 22일이 아닌 최대 21일 산정가능)
4월	4.1 ~ 4.5. 기간 동안 휴원 이행 시 '코로나 특례비용' 3일 인정 (+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추가 적용 가능)

③ (인정비용) 2020.3.31.기준 공단에 급여일정이 등록된 일자(월~금요일)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(전액 공단부담)를 지급 ... 월 중 하루라도 이용 필수(사망일, 해외출국일 적용불가)

※ 4월분은 반드시 3월말('20.3.31.) 기준 적기통보 내역(일정등록 포함)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하며, 4월 당월 수정 통보 건은 산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3월말 전까지 급여계약을 통보하여야 함을 유의

※ 고시 제31조의'라-3'의 60%(치매전담실은 제74조의 '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'의 60%)를 최대 한도로 함.

④ 휴원기간 중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%를 초과(소수점 이하 반올림)한 날에는 미이용자에 대하여 기존 2차 지침대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(본인부담금 제외)만 지급

◆ (산정기준)

① 공단에 2020.2.29. 기준 3월 급여계약 또는 2020.3.31.기준 4월의 급여계약 통보가 되지 않은 수급자는 적용불가

② 해당 월 중 하루라도 급여이용을 한 수급자만 해당되며, 해당 월 하루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

③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을 하여야 지급하나, 해당 특례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.

④ 2020.3.월에 긴급돌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하는 경우는 '코로나 특례비용'을 수급자별 최대 5일만 산정할 수 있으며, 인정비용도 기존 2차 지침대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(본인부담금 제외)만 지급함. ... 2020.4. 정상운영 시 산정불가

○ (본인부담금)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...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수납

○ (월한도액) 미포함 ...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포함됨.

○ (중복급여 사용) '코로나 특례비용' 산정 일자에 방문요양 등 타 급여 중복이용은 가능하나,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 시 비용 산정 불가 ... 수급자가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을 실제 이용한 일자에는 해당 '미이용일 특례비용'을 산정한 기관의 특례비용을 불인정함.

- (급여비용 가감산 기준)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에 한하여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기준에서는 ① 입소자수, ② 월 가산 기준금액, ③ 급여 제공일수(긴급돌봄 받는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만) 제외함.

*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가감산 산정 시 ① 입소자수, ② 월 가산 기준금액, ③ 급여 제공일수에 포함됨.

- ①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을 산정하는 수급자는 고시 제47조제2항제1호의 해당 일자의 ‘입소자 수’에서 제외

②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, 간호사 배치가산,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 금액 산출 시 ‘월 가산 기준 금액’에서 제외

③ 해당 일에 부득이하게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을 경우 입소자 수 계산 시 필요한 ‘급여제공일수’에서 제외(종사자가 배치되지 않은 날에는 해당 비용 산정불가)

※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을 산정하는 수급자 외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일에 포함됨.

④ 해당 일에 수급자 전원이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(5일) 또는 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 만을 청구하는 날은 월 기준 근무시간 계산 시 필요한 ‘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’하되, 해당 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.

- (한시적 지원금) ‘코로나-19 한시적 미이용일 특례비용(10일)’은 고시 제75조의2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산정을 위한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.

- (준수사항)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은 주야간보호기관의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을 이행 시 지급하므로 ① 공단에서 매일 실시예정인 긴급돌봄 이용률 실태확인에 협조 필요 ②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고 보관 필요

○ (청구기간) 2020. 4. 28. ~ 2020. 6. 30. 한시적 청구 가능

*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청구 가능

○ (청구종료일) 2020. 6. 30. ... 청구 전산화면이 한시적 운영되므로 반드시 적기청구 요함

○ (행정사항)

- '코로나 특례비용' 3월분은 2020.4.28.이후 청구 전산화면이 오픈 되므로 구체적 전산청구방법은 2020.4.28.이후 별도 홈페이지 공지 예정 ... 전산 개발에 필요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추후 안내 예정

⇒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(최대 월 5일) 대상자만 우선 하여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,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대상자만 (청구전산화면) '가산 및 감액산정 / 입퇴소 내용관리 (주야간보호) / 입퇴소내용 신고 화면'에 등록

□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(종사자 미배치)한 경우 :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필요한 '근무가능일수'에서 제외

○ 가산 또는 감액산정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시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'근무가능일수'에서 제외함.

※ 일정기간 실제 미운영한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산출식 : [해당월 중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,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, 미운영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× 8시간]

6. 5등급 수급자 일반 방문요양 한시적 허용

- ☐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는 5등급 수급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일반 방문요양 인정
 - (대상) 5등급 수급자 …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불가
 - (인정범위) 1일 1회 최대 ‘180분 이상’ 급여 범위내 인정 (고시 제18조 표 ‘가6’)
 - ※ 해당 기준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 허용하며, 고시 제19조 제4항에 따른 270분 이상 서비스 및 제19조제7항의 요양보호사 2인 동시 서비스 인정 불가
 - (적용기준) 월 한도액 범위 내 … 동일 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중복 이용 불가
 - ※ 동일 날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고시 제17조7항에 따라 1일 2회 (2시간) 방문요양 급여이용이 가능함.
 - (적용월) 2020. 4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7.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기준 특례

- ☐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 기준
 - 주야간보호 기관의 휴업 또는 수급자가 감염우려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
 -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, 고시 제13조제7항의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(최대 5일)로 보아 월 한도액 50% 추가산정 가능
 - * 전산등록 경로 : 급여비용청구 / 급여내용 자료관리화면 / 서비스 내역 저장 / 특정내용등록 / 월 20일 미만 이용사유 / 기타(텍스트로 코로나 관련 사유 기재)

- 고시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0일 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고시 제13조제7항의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월 한도액 70% 추가 산정 가능

○ (적용월) 2020. 4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8.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

□ 코로나-19 감염우려로 인해 방문형 급여를 일시 중단하는 수급자가 증가하여 자의가 아닌 상황에서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산정

○ (대상)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, 간호(조무)사, 치과위생사 ... 고시 제11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

○ (인정기준) 2020.1. (급여제공월)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받은 대상자가 2월, 3월, 4월에 각각 30분 이상 ~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

○ (산정금액) 2020.1. (급여제공월) 기준 산정된 장기근속장려금

○ (계속근무기간 적용기준) 고시 제11조의4제3항제2호의 '동일 장기요양기관'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'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'를 산정 할 시 해당 특례 적용월은 포함하지 않음.

※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을 위한 '근무기간 산정' 시에는 해당 월 미포함.

- (적용월) 2020.2. ~ 4. (3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9. 특별재난지역 등(대구·경북) 소재 종사자 퇴직에 따른 특별 지침

- 특별관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구·경북(전체)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종사자가 감염우려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미적용 ... 특별재난지역의 추가지원 목적
 - * 퇴사 직원의 실제 근무기간(6개월 상근 요건)에 관계없이 적용
- 특별재난지역 등(대구·경북에 한함)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은 **2020.6.까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받지 않으며**, 동 기간 동안 퇴사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음.
 - 다만,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**2020.6.까지** 근무인원 1인이 배치된 것으로 적용함.
 - * 특별지침을 적용받는 직종 외 타 직종 종사자가 추가배치 된 경우에는 인력 추가배치가산 적용이 가능함.
 - (적용월) **2020.2. ~ 6. (5개월간)** 급여제공월 기준

10.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 기준

- 감염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
 - (격리기간 10일 이내) 격리기간만큼 외박비용 인정
 - (격리기간 10일 초과)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비용 인정
 - ※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

☐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

○ 격리기간의 일수에 따라 외박비용을 산정하되, 최대 15일 인정

※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

☐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

○ 시설(단기보호 포함)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비용 인정

☐ (적용월) 2020. 4. (1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11.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

- ☐ 방문간호 시설장이 수급자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코로나-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,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 연장
- (대상) 유효기간이 3.1.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
 - (적용월) 2020.3.1. ~ 4.30.(2개월간) 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급여비용 인정함.

※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함.